

의안번호	2206492
의 퇴 인	최보운 의원
회 답 일	2025. 2. 14.
추 계 번호	24B5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 정부의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책 마련 대상에 “장애 유무”를 추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정부의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책 마련 대상에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를 추가(안 제14조)
 -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 성별, 연령,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책 마련 대상에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를 추가하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전국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인터넷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표 1] 현행법 제14조에 따른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4년 예산	'25년 예산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반-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보호·관리, 인터넷 이용 관련 정부공식통계 산출 및 인터넷주소 분쟁해결제도 운영 등 인터넷 기반 인프라 강화	2,628	2,135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보편적 통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 버스정류장,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종료되었으며, '24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8만개소에 구축 완료	395	- (사업종료)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 - 본 사업은 '24년 종료 사업으로, '24년까지 총 2,842개 마을에 초고속망 구축 완료	1,385	- (사업종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법 제14조에 따른 인터넷 기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¹⁾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4년 예산	‘25년 예산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고, 디지털을 보편권 수준으로 보장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실현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접근성 제고 등	7,179	5,691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등	35,685	32,085
ICT융합 디지털 포용기술개발 (R&D)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기반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1,200	3,6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책 마련 대상에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를 추가할 경우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신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